간통·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 관리에 관한

법률위반(대마)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8. 14. 2009노80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김현수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홍성칠

【환송판결】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노1628 판결

【주문】

1

- 1.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.
- 2.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- 3. 피고인으로부터 201,5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8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파기

기록에 의하면,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,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'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'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.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8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파기

기록에 의하면,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,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'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'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[이유]

1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8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파기

기록에 의하면,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,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'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'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[이유]

1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징역 8월)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파기

기록에 의하면,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,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'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'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,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